

토요타 렌터카 대여 약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 임차인(대여계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도 포함) 및 운전자(이하 각각 '임차인' , '운전자라고 함)는 당사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임차인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여증 작성 등 렌터카에 관한 기본 지침(자여규칙 제138호 1995년 6월 13일, 이하 '기본 지침'이라고 함)에 근거한 렌터카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 자동차, 보험, 휴대전화, 그 외의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또는 각종 이벤트나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홍보 인쇄물의 송부, 전자 메일의 송신 등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 상품 개발 등 또는 고객의 만족도 향상책 등의 검토를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및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 임차인은 당사가 하기에 제시한 범위내에서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임차인은 해당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내용 : 이용 차종등급, 사용목적, 임차 개시일시 등의 렌터카 임차에 관한 정보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제공처 및 그 이용목적 :

| 제공처 | 제공처의 이용목적 |
|--|---|
|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 임차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는 경우 |
|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p>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와 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p> | 임차인에게 상품의 기획이나 개발 혹은 고객 만족도 향상책 검토 등에 참고하기 위해 렌터카를 임차한 동기 등 또는 당사의 고객 대응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p>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와 도요타 렌터카즈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도요타 렌터카즈점'이라고 함)</p> | 대여계약 체결의 원활화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시책 입안 및 프랜차이즈 전체에 대한 제제 정비 |
| 3 | 당사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습니다. URL https://rent.toyota.co.jp |

제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 당사는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함)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또한 약관 및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시에는 그 특약이 본 약관 및 세칙보다 우선합니다.
- 임차인은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할 경우, 약관 및 세칙 중 운전자의 의무로 정해진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알리고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제2장 예 약

제2조(예약의 신청)

-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 때에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미리, 차종등급, 사용목적, 임차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그 외의 임차조건(이하 '임차조건'이라고 함)을 명시하고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나 당사가 인정한 임차조건의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소정의 예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임차인은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 임차인 및 당사는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일시까지는 렌터카의 대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차인 및 당사는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한 임차 개시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고 함)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약이 취소됩니다.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 소정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하며, 당사는 이 예약취소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당사 소정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 전2개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임차인 및 당사는 예약의 취소 및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조 및 다음 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등급, 부속품, 금액차 및 휴먼차의 구분, 트랜스미션 사양 등의 조건(이하 '조건'이라고 함)에 해당하는 렌터카의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 당사는 전항의 경우로 예약과는 다른 조건의 렌터카 대여가 가능할 때에는 전조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예약과 다른 조건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함)를 대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 당사는 예약시의 임차조건 가운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예약시와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과 예약 조건에 맞는 렌터카의 대여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 임차인이 제2항의 신청을 거절한 경우 예약은 취소되며, 예약금 등의 처리는 전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예약 업무의 대행)

-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도요타 렌터카 예약센터나 여행 대리점, 제휴사 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함)에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신청을 한 경우, 임차인은 예약변경 및 취소를 그 예약신청을 한 대행업자에게 합니다.

제3장 대 여

제7조(대여계약의 체결)

- 임차인은 임차조건을, 당사는 약관 및 요금표 등에 따른 대여조건을 각각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사는 기본 지침 2(10) 및 (11)에 근거하여, 대대부(대도원표)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증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대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당사의 요구에 따라서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하고, 당사의 요구에 따라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합니다.
-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외에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긴급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 등의 지불 방법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5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예약금 등의 처리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대여 거절)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운전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띠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어린이용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킬 경우.
 -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근로 렌터카 협회 정보관리 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고 함) 또는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도요타 렌터카즈점 간에서 공유하는 대여 주의자 리스트(이하 '대여 주의자 리스트'라고 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 지정 폭력단, 지정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그 외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당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나 언사를 한 경우, 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약관 및 세칙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 그 외 당사가 부적당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전항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함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가능한 렌터카가 없을 때.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용 카시트가 없을 때.

3 전 2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을 경우, 예약금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대여계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부속품 포함, 이하 동일)를 인도할 때 성립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합니다.
- 전항의 인도는 제2조의 임차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0조(대여요금)

- 대여계약이 성립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합니다.
- 대여요금이란 이하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그 조회 출처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 기본요금
 - 면책 보상료
 - 특별 장비료
 - 편도 서비스 요금
 - 연료비
 - 인수 배차료
 - 기타 요금
-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시,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고베 운수 감리부 호교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합니다.
- 당사가 대여요금을 제2조에 의거한 예약이 완료된 후에 개정한 경우, 임차인은 예약완료시에 적용된 요금과 대여시의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저렴한 쪽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제11조(임차조건외 변경)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후, 제7조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점검 정비 등)

- 당사는 도로운송 차량법 제 47조의 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준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대여에 있어서, 별도로 규정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 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실시하며, 렌터카에 정비불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렌터카가 임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13조(대여증의 교부 및 휴대 등)

- 당사는 렌터카 인도시,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 고베 운수 감리부 호교 육운부장 또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이 기재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중, 전항에 의거하여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과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4장 사 용

제14조(임차인의 관리 책임)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중'이라고 한다), 상당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법령, 약관, 세칙, 취급 설명서, 그 외 당사가 제시하는 사용법을 준수하여 렌터카를 사용합니다.

제15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인 임차한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에 앞서 도로운송차량법 제 47조 2(일상 점검 정비)에서 규정하는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 렌터카를 소정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 또는 제7조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 렌터카를 전대하여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일 또는 그 밖의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
-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일 또는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당사가 경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일 또는 다른 차를 건인 혹은 뒤밀음에 사용하는 일.
- 법령 또는 공사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일.
- 렌터카를 해외로 반출하는 일.
- 당사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렌터카 차내에 물품 등을 방치, 금연 차량에서의 흡연행위 등 렌터카의 오손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음)을 하는 일.
- 그 외 제7조의 임차조건 또는 대여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

제17조(위법주차)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주차를 했을 경우, 위법주차후 즉시 위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라고 함)에 출두하여, 자신의 책임 및 부담으로 위법주차와 관련된 법칙금 등을 포함하여 위법주차로 인한 견인차 이용, 보관, 인수 등의 제반비용을 납부해야(이하 '위반 처리라고 함) 합니다.

